

산업안전 Q&A

Q

당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298명정도이며, 인접지역에 25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각기 번지수가 다른 2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공장, 2공장 형식으로 구성) 이 2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으며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 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1공장, 2공장 따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 2 안전관리자 1명 및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1, 2공장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답변 바랍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2003. 6. 30)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동일 사업주(개인사업주 또는 법인)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이 2개의 공장이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 있고, 이들 공장의 상시 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미만이라면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건설현장에서 고층의 건축물이 시공되고 있는 작업장의 측면 지상을 통행하는 사람을 낙하물에 의한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외부비계 등에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호선반 등을 설치하는데 지상의 통행로를 낙하물의 충격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박스형 터널식 통행로를 설치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낙하물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 외부비계 등에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호선반 등의 시설물 전체 또는 일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여부는 측벽 등의 장소나 갱폼 등의 공법에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비록 지상의 통행로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하물방지망을 위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일일출력인원150명정도인건설현장의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올가을이후SARS등전염병의창궤이우려되고있습니다.
집단숙식등단체생활이이루어지는건설현장의특성을고려하여금번근로자건강진
단시단체예방접종을시행코저하는데그소요비용의안전관리비정산이가능한지궁
금합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건설사업장등에서'산업재해'의예방을위하여법령에규
정된사항의이행에필요한비용을말하는것으로,그사용은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제2002-15호,2002.7.22)제7조에서정하는사용내역(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을따르도록하고있습니다.
귀질의근로자단체예방접종은동기준별표2제6항(근로자의건강관리비등)에규정되지않
은사항으로써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하기어렵다고사료됩니다.



천재지변(태풍)으로인하여당사의안전시설물이크게파손되었습니다.이에,안전시
설을복구및설치하고자하는데,그비용이현도급안전시설비의50%책정되어있는
것을초과합니다.
천재지변으로인한복구를위해서총도금액의안전관리비추가계상이가능한지요?
아니면현재남아있는총도금액안전관리비를안전시설비의50%를높게책정하여집
행가능한지,초과하더라도복구가불가피할경우안전시설비를집행하였을경우실집
행금액을받을수있거나추가안전관리비책정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제2002-15호)에따라『안전시설비등』
은전체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50%범위내에서사용하여야하나공사의특성상당해공사의공
사감독자(감리자를포함)또는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인정하는경우에는항목별사용기준
한도의50%범위내에서이를초과하여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기계상된산업안전보건관리비총액범위내에서조정이가능한것이므로,발주자또는
자기공사자는설계변경등으로인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대상액의변동이없는경우
에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추가계상할의무는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